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21,662,678	18,649,880
일반회계	615,537,233	18,466,117
특별회계	6,125,445	183,763
기타특별회계	6,125,445	183,763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3,441,352	103,241
주택사업특별회계	78,066	2,342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1,187,944	35,638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110,546	3,316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1,142,550	34,277
천사성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	164,987	4,950

제 2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1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로 간주처리할 수 있다.